

發明獎勵를 위해 發明保護法을

本會 玉 文碩理事 이코노미스트誌 「나의



本會 玉 文碩 理事(사
진)는 지난 7月 5日 字 發
刊經濟專門誌 「이코노미
스트」에 寄稿한 「나의
提言」을 통해 發明保護
法에 대한 所信을 밝혔
다.

이번 寄稿에서 玉 文碩理事는 「開發技術의
核心을 이루게될 새로운 發明·考案이 死藏되
지 않고 그 特徵과 技術性을 살려나가려면 우
선 企業에서 關心을 갖고 關聯技術을 사들이

거나 投資를 해야할 것인바 이를 위한 政府次元
에서의 效果的인 誘引策이 마련돼야 할 것」이라
고 지적하고 「따라서 먼저 생각할수 있는 것은
지난 1958년에 制定 施行되다가 10年만에 租稅
減免規制法의 대상에 묶여 그 實施를 보지 못하
고 있는 發明保護法을 復活시킴으로써 企業의
投資誘引效果를 거둘 수 있다」고 強調했다.

玉 文碩理事는 또 「發明品の 企業化를 통한
生産 및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해 國內에서 그
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發明保護法이 租減法
과 關聯되어 유명무실하게 오늘에 이르고있는

우리나라의 特許出願은 해마다 15%정도의 伸
張率을 보여 지난해에는 技術開發과 關聯이 깊
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무려 23,398건이 출원되
고 4,725건이 登錄되었다.

이 실적은 內外國人分을 합친 것이기는 하나
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내 특허나 실용신안
을 얻은 것도 2,114건이나 된다.

특허청의 어려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이와
같은 發明·考案들이 실제로 산업과 連繫되어
실용화되고 있는 것 보다 死藏된채 빛을 보지못
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겠다.

企業發明보다 個人發明의 출원 및 등록이 많
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발명의 실용화
내지 기업화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로 어려움이
뒤따를 것으로 보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關稅
기관 및 기업에서 關心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

제가 아닌가 싶다.

지난 82년에 종전의 특허협회를 발명특허협회
로 개칭하여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企
業化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러한
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.

발명특허협회에서는 매년 1억원 정도의 국고보
조금으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발명품 가운데
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試作品을 제작해주고 있
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도 15건 정도 밖에
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우리가 무역상담을 하려면 Buyer에게 샘플을
보이든지 送達하여 去來가 이루어지듯이 발명의
기업화에 있어서도 試作品은 샘플의 역할을 하
게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자금이 없어 시
작품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음을 감

復活하자

提言」서 強調

것을 發明界 모두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」고 前提하고 「發明은 特許된 內容만으로 生産이나 輸出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技術的 補完이나 市場需要에 맞는 開發投資를 위해서는 制度的인 Incentive가 되는 發明保護法을 現實에 맞게 改善補完하거나 特許法을 改正해서라도 본 趣旨와 目的 및 效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運營의 妙를 기해나가야 할 것」이라며 發明保護法의 부활을 거듭 促求했다. 玉文 碩理事의 寄稿內容을 紹介한다.

—編輯者 註—

안할 때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발명과 고안 가운데 우수한 것만이라도 기업화를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검토 돼야할 것이다.

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기관으로 현재 한국 技術開發(株), 한국개발투자(株), 한국기술금융(株)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나 冒險投資를 꺼려 개인발명가들이 이 기관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담보력이 없는 개인보다 비교적 비용이 손쉬운 기업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여하간 개발기술의 核心을 이루게 될 새로운 발명, 고안이 사장되지 않고 그 특징과 기술성을 살려나가려면 우선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술을 사들이거나 투자를 해야할 것인바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효과적인 誘引策이

마련돼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58년에 제정 시행되다가 10년만에 租稅減免規制法의 대상에 묶여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發明保護法을 復活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.

발명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명품의 생산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보호육성하는데 있으며 受惠범위와 대상은 발명을 기업화하거나 특허권을 讓受 또는 실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된다.

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부가 지정한 품종에 대해서는 그 생산에 있어 그 당시의 영업세, 소득세 물품세를 3~5년동안 면제함은 물론 발명품의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그 국내수입의 관세까지도 면제해 왔다.

이와 같이 발명품의 기업화를 통한 생산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발명보호법이 租減法과 關連되어 유명무실하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발명계 모두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.

발명은 특허된 내용만으로 생산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술적 補完이나 시장수요에 맞는 개발투자를 관련기업이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Incentive가 되는 발명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거나 특허법을 개정해서라도 본 취지와 목적 및 효과를 살릴수 있도록 하는 그 運營의 妙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명을 創出하는 두뇌인력을 키워 기술축적을 해나감으로써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발명장려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곧 技術立國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. (∞)